「노동법에 대한 2006년 제112호 일부 개정법」

(법률 제112호)

제1조

『노동법』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노동조합은 국내·역내·국제 사회 및 단체에서 오만근로자를 대표하는 공공연합이다. 노동조합산하에는 노동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2조

『노동법』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노동조합, 노동연맹 및 오만왕국노동자를 위한 공공연맹은 인력부에 등록한 날부터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며, 연맹의 업무에 대한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 없이 자유로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장관은 노동조합, 노동연맹 및 오만왕국노동자를 위한 공공연맹의 설립·업무·등록을 규정한 결정을 공포한다.

제3조

『노동법』 제110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 법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장관결정에 따라 노동조합, 노동연맹 또는 오만왕국노동자를 위한 공공연맹을 대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연맹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기타 징벌을 집행하지 못한다.

제4조

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포일: 2006년 11월 4일(이슬람력: 1428년 10월 12일)